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또는 그“를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구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때”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부 또는 우편”을 “교부·우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부,”를 “교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을 ““(조례로 정하는 바”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하여는”를 “대해서는”으로 하고, “명의로 된”을 “명의로 된”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를 “구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도”를 “대해서도”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중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을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를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수유예등의”를 “징수유예 등의”로 한다.

제24조 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를 “(징수유예 등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징수유예등을”을 “징수유예 등을”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를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압류하고자 하는”을 “압류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전이라 할지라도”를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자력”을 “재산·자금능력”으로 한다.

제29조 중 “날로부터 3월”을 “날부터 3개월”로 하고,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 중 “성실납부자란”을 ““성실납부자”란”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규정하는”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간”을 “구보에 게재하거나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개월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를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관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45조 중 “인가결정되면 동”을 “인가결정되면 인가된”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통정한”을 “서로 짜고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u>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세무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u>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u>을 말한다.</p> <p>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u>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우편을 포함한다)</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 <u>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u> -----.</p> <p>2. <삭 제></p>
<p>제3조(적용) <u>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3조(적용) <u>구세</u>----- ----- ----- ----- ----- ----- ----- ----- -----.</p>
<p>제7조(<u>조례시행에 관한 규칙</u>)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p>	<p>제7조(<u>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u>) ---- --- <u>시행에</u>-----</p>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1조(보통우편 송달부) 법제30조6항에 따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우편물의 송달부는 규칙에

-----.

제9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 받으려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교부·우편 -----

----- 교부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조례에 정하는 바”란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반우편 송달부) -----
----- 일반우편 -----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서 송달 등) ① (생략)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구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채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구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20조(구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제12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서 송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해서는 -----

----- 명의로 된 -----

-----.

제18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

----- 구금고 -----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해서도 -----.

<삭제>

<삭제>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연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생략)
-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제27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1. -----

대해서는 -----

 2. (현행과 같음)
- ② ----- 압류하려는 -----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8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구세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0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

-----.
-----.
-----.
-----.

제28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

----- 전이라도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재산·자금능력 -----
-----.

제29조(구세확정 전 보전압류) -----

----- 날부터 -----
3개월 -----
----- 3개월 -----

-----.

<삭 제>

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1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삭 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른다.

1. (생략)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
를 받은 경우에 채납처분에 의하
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
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
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야 한다.

제37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
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
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
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
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
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
류 후 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
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

----- 하려는
-----.

1. (현행과 같음)

2. -----
----- 따라-----

-----.

제37조(공매) ① -----
----- 그 밖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해서는 -----

고, 체납된 구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9조(배분방법) (생략)

제40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생략)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2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9조(배분방법) (현행과 같음)

제40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③ ----- 구
보에 게재하거나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개월간 -----.

④ ----- 지체 없이 -----.

제42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
----- 있
을 때에는 지체 없이 -----

-----.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로 하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생략)

제43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45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생략)

② -----

-----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 모든 사항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
----- 인가결정되면 인가된 -----

-----.

제46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

----- 서로
짜고한 -----

-----.